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2022. 10. 14 선고 2022가단1026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김동완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김포등기소 2020. 11. 26. 접수 제150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김포등기소 2020. 12. 21. 접수 제1612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소외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고서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1. 14. D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9 사건)을 제기하면서 2020. 12. 28. 발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나타나 있다.

2) 원고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2021. 1. 13.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D이 채무 초과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2021. 1. 13.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김정아

별지

부동산 목록

1. 집합건물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제12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13층 아파트

1층 434.204㎡

2층 434.204㎡

3층 434.204㎡

4층 428.604㎡

5층 425.244㎡

6층 425.244㎡

7층 425.244㎡

8층 425.244㎡

9층 425.244㎡

10층 425.244㎡

11층 425.244㎡

12층 425.244㎡

13층 425.244㎡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E 대 22080.4㎡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002년12월31일 제12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84.993㎡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080.4분의 42.809

